

직원인권보호 안내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계약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직원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본 원 직원들과 수급자 어르신·보호자께서는
상호 격을 갖추고, 존중하는 태도로 예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서로 신뢰를 쌓아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장기요양서비스 기본 원칙은 잔존능력을 활용하는 것이고, 직원들은 어르신들이 스스로의 잔존 능력을 활용하여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는 지원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 인력에 의해 제공되는 돌봄서비스는 모든 어르신들을 두루 보살핌이 되어야 하며 1:1 돌봄의 수준을 원하시는 경우 어려운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2. 장기요양제공계획서 상의 서비스 내용을 바꾸고자 하실 경우,
서비스 계획을 다시 세우자고 요청하고 협의하셔야 합니다.
3. 본원 직원들은 수급자께서는 “어르신”, 보호자께서는 “보호자님” 으로 호칭을 통일하고 있습니다.
어르신과 보호자님들도 직원들에게 상호 존중할 수 있는 호칭을 사용 해 주세요.
예) 요양보호사님, 사회복지사님, 간호사님, 선생님 등
4. 직원들을 비하하는 발언은 절대 하지 마시고, 서로 존댓말을 써주세요.
예) 야!, 어이!, 아줌마!, 등 부적절한 언어, 폭언, 폭력, 등
5. 폭언·폭력·성희롱·모욕 등은 서비스 제공 중지는 물론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마련된 직원 인권보호 안내문입니다.

어르신을 모심에 있어 보호자님과 직원들이 좋은인연으로
상호 존중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어르신, 보호자,
직원, 우리 다같이

1년 365일

상호존중하는 요양원



내가 들어도 기분 좋은 고운말 함께해요



서로 존댓말 쓰기

웃으며 인사하기

칭찬의 한 마디
주고받기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폭언·폭행·성희롱



절대 안돼 STOP!

“
욕설과 막말
폭언

“
성적 모멸감
성희롱

“
불쾌한
신체적 접촉
성추행

“
신체적 폭행
성폭력

“
신변위협으로
위협 폭행
폭행

효돌이 효봄이와
약속해요!



사단
법인

한국노인복지중앙회